제222회 거창군의회 <정 례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10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쪽수
2016-86	거창군청 및 읍면시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6-87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6-88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16-89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6-90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16-91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16-92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2016-93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2016-94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7
2016-95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8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읍·면 기관명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읍·면 기관명 변경함(안 별표)

 ○ 거창읍사무소 ⇒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위천면사무소 ⇒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가조면사무소 ⇒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협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11. 02. ~ 11. 2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조례 개정현황
 - 개정완료(4곳):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남해군
 - 개정 중(3곳):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읍·면사무소"를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라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1조(목적)「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읍·면사무소	제6조에 따라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및 면사무소

[별표] 거창군청, <u>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u>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거 창 군 청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90
주상면 사무소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웅양면 사무소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431
고제면 사무소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14
북상면 사무소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10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4
마리면 사무소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18
남상면 사무소	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36
남하면 사무소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41
신원면 사무소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7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8
가북면 사무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7-16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8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2015.4.02.)에 맞춰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증설투자비 지원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체계 정비함

- (현행)총칙-투자유치 지원체제-<u>외국인투자의 지원-국내기업 투자지원</u>-보칙 (변경)총칙-투자유치 지원체제-<u>국내기업 투자지원-외국인투자의 지원</u>-보조금의 사후관리 등-보칙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2015.4.02.)에 맞춰 조문 체계 정비: 이 조례의 주 적용대상인 국내기업 투자지원 내용을 외국인투자의 지원 보다 앞에 기술하여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투자유치위원회 정비(안 제3조)

- 위원장 변경: 공동위원장 ⇒ 군수
- 다. 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신설(안 제12조)
- 라. 산업용 부지 매입 및 임대지원 조항 신설(안 제15조)
- 마.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조항 신설(안 제25조)
 -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 사업 이행 의무 명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지방자치법」제9조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
-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규정」제9조의2

- 나. 예산 조치: '17년도 예산 980,736천원 기확보
-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 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10. 28. ~ 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조례현황
 - (가) 경상남도 시 · 군 조례: 19건
 - (나) 도 조례에 따라 개정한 시·군: 7곳(양산시, 거제시,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사천시, 함안군)
 - (다) 도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중인 시 · 군: 1곳(창녕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 2. "공장의 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1호와 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 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 2. 군 소속 공무원
-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 및 투자유치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용하는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 2. 임대 산업단지 용지 매입
 - 3.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그 밖에 기금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국내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 제7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기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도외기업 본점의 관내 이전 지원) 군수는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제7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관내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증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완납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토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분양가격 감면에 따른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14조(기반시설 사업지원 등)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외국인의 투자 사업 및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 제16조(채권확보)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 이행확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17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거창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19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수 없다.
- 제20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 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보조금의 사후관리 등

- 제2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라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인원을 3년 이내 유지 못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25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이중지원 금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27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 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기관·기업·공무원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된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8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재기재하여 발생하는 법령 불부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위하여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목적조항 정비함(안 제명, 제1조)

-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근거: 법 제60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이 법에 명시되어 위임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제명 및 목적조항에서 관련 내용 삭제함

나. 위원회 구성관련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함(안 제2조)

○ 법령개정사항(위원장이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 위촉위원 중 관련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조항 삭제, 위촉위원 임기 규정 신설) 미반영으로 법령 불부합하여 삭제

다. 위원회 기능관련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함(현행 제4조)

○ 법령 개정사항(관련 업체가 구매가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과징금에 관한 사항) 미반영,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자문"기능까지 조례에 규정하여 법령 불부합하여 삭제

라. 영 제109조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시항 규정함(안 제2조 ~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 간사, 회의, 심의요청,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9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11. 2. ~ 11. 2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안 제2조제1항 위촉위원 성별고려사항)
 - (6) 도내 조례 개정 현황
 - 개정완료(13곳): 거제시,김해시,사천시,양산시,진주시,창원시, 통영시,고성군,남해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 입법예고 중(5곳): 경상남도,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1명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회의에 부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에 부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심의요청) 거창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89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16.7.12.시행) 개정내용을 반영 하여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과 문화시설 등에 대한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 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16.7.12.) 내용 반영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등이 가능한 공유재산 대상 삭제(안 제23조) -근거: 조례 위임근거인 영 제29조제1항제7호 삭제됨
 -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안 제30조제6항)
 -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시설의 경우 대부료를 50퍼센트 이내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함
 -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분납 이자율,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삭제 (안 제28조제2항후단·제4항, 제35조제3항, 제81조제1항후단, 제81조의2)
 - -이유: 분납 이자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 용하도록 개선
 - **-근거:** 영 제32조, 제39조, 제81조, 제82조
- 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위임행정규칙) 제정 사항 반영 (안 제34조제4호)
 -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 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매각 사항 신설
- 다. 법령과 달리 규정되어있어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및 정비함 (안 제12조, 제75조, 제82조제2항)

- 매각대금 등의 사용,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은닉 공유재산 신고자 보상관련
- 근거: 영 제10조, 제84조제3항, 제90조
- 라. 감정평가의뢰대상 확대(자치법규 정비과제 정비)(안 제71조, 제83조)
 - (현행)감정평가법인 ⇒ (개정)감정평가업자
 - 영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개정으로 일반재산 매각교환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마. 그 밖에 인용 법명 및 조문 등을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29조, 제32조, 제39조, 제81조,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자부 고시)」(위임행정규칙) 제16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11. 2 ~ 11. 20.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 현황
 - 개정완료(2곳): 고성군, 하동군
 - 입법예고 중(5곳): 창원시, 양산시, 진주시, 함양군, 남해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채석 (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로 한다.

제25조 제목 "(채광물 채취료 등)"을 "(토석채취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광물 채취"를 "토석 채취"로 "채광물 채취료"를 "토석 채취료"로 "원석시가"를 "토석시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채광물"을 "토석"으로 "채광물 채취료"를 "토석 채취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토석시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제2항후단과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려면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대부"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대부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 ⑦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3호 중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을 "2012년

12월 31일"로 "점유·소유"를 "소유"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4항·제5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를 "군수가 지명한 검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1조제1항후단을 삭제한다.

제81조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3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제35조 제3항, 제81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 까지의 이자율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혀 해 개 정 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2조(매각대금 등의 사용) ① 군수는 〈삭 제〉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 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 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 하여야 한다.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삭제 '14.10.01) ① (삭제 '14.10.0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 다)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 <삭 제> 영 제29조제1항제7호 및 영 제38조제1항 제2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 계약으로 대부 ·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신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신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

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시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4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u>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채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한다.</u>

- ②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1. (생 략)
-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3. ~ 6. (생략)
- 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4조제

제24조(대부료율) ①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6. (현행과 같음) ⑥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25조(토석채취료 등) ①

1항단서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 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 ② 제1항에서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② 제1항의 "토석시가"란 「감정평가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원석시가를 결정하는 때 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삭 제>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 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 물의 종류별 ·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② 군수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 1. ~ 2. (생략)
- ③ (생략)
-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 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신 설>

		- <u>토석 채취</u> <u>토석 채</u>	
	<u>토석시</u>	 <u>가</u>	
 വ	 	 "ㅌ서 ス\기."라	「ルスロウ

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삭 제>

⑤ <u>토</u> &	<u> </u>
	_
<u>토석</u> 토석 채취료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후단 삭 제>	_

- 1. ~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 려면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략)
-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삭 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 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시장ㆍ시장활성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조례로 구역 및 상점가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 에 의한 감액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음 각 호와 같다.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 3. (생략)
- (5)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관광 진흥법 시행령」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및 대부료 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u> </u>	제19조
제12항			

1. ~ 3. (현행과 같음)

-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하다.
-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제2 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
 - 1. ~ 3. (현행과 같음)
 - -----대부료
 - 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4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략)

3.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 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 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77조에 따라 「거창군 건축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 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 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위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2. (현행과 같음) 3. <u>2012년 12월 31일</u>	_
<u></u> <u>全</u> 	_ _ _
	_
	_ _ _
	_

<신 설>

5. ~ 6. (생략)

7.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 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 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 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

8. ~ 9. (생략)

10.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 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 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생략)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 2. ~ 6. (생략)
-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8. ~ 9.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 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 ④ (삭제 2014.10.01)

4.	「사도	E법 <u>」</u>	제4	조에	따리	} 기	H설되는	사
도어	편	입되	는 경	공유?	지를	ユ	사도를	·개
설ㅎ	라는	자에	게 대	내각 [·]	하는	경-	<u></u> 우	
5.	~ 6	. (현	행과	같-	음)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 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 9. (현행과 같음) 10. <u>2012년 12월 31일</u>
11. (현행과 같음)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삭 제>
2. ~ 6. (현행과 같음) 7
<u>지식산업센터</u>
8.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u>삭 제></u>

(5) (생략)

제52조(변상조치) 사용자의 과실로 인 〈삭 제〉 하여 관사의 시설 또는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훼손 · 파괴하거 나 잃어버린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고 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서 감 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 ⑦ (생략)

제75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 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 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 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8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 81조제1항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 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 략)

	(5)	(현행과	같음)
--	-----	------	-----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감정평가업자</u>
⑤ <u>감정평가업자</u>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75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군수가
지명한 검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삭 제>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82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 제82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 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에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 ④ (생략)

제83조(토지 등의 합필 및 분할) ① (생 략) ② 군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 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 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 하며,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2조제4호 따른 감정평가업자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토지 등의 합필 및 분할)	① (현행과 같음)
②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시에</u>	<u> </u>
제9ス제1중 따르 가저며	가어 가

거창군 국가유공자 예우 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9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직군인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추가 지원대상인 전상・순직・공상군인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7호 ~ 제9호)
- 나. 명예수당 지급대상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직 군인의 유족: 월 3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자치법」제9조
- 나. 예산조치: '17년도 예산 360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10. 31. ~ 11. 21.
 -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다른 지자체 현황 : 창녕군, 산청군, 양산시, 고령군, 봉화군, 군위군 등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상이군경회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 일부 반영
거창군지회	범위 확대	범위 변경	(군경 ⇒ 군인만 지원
•	- 참전유공자 미망인과	- 참전유공자와 전상・	소방·경찰공무원 제외)
전몰군경유	공상군경, 전상·공상·순	공상군인 미망인,	
족회거창군	직군경 미망인, 공상·순	순직군인의 유족	
지회	직군경 유족으로 범위		
•	확대		
전몰군경미			
망인회거창			
군지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전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
- 8. "순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
- 9. "공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를 "전몰 군경과 순직군인의 유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예수당: 전몰군경과 순직군인의 유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명예수당
 - 가. 전몰군경의 유족,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 나.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직군인의 유족 : 월 3만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전몰군경"이란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u>〈신 설〉</u>	제2조(정의)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전몰군경과 순직군인의 유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현 행	개 정 안
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	2 ②
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수당: 월 10만원	1. 명예수당 가. 전몰군경의 유족,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나.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 한 경우 그 배우자, 순직군인의 유족:
2. 사망위로금: 30만원	<u>월 3만원</u>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직군인의 유족: 월 3만원의 명예수당
- 관련조문: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 선양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	용(a - b)	360	360	355	350	345	1,770
	도비	-	-	-	-	-	-
세출	군비	360	360	355	350	345	1,770
	소계(a)	360	360	355	350	345	1,770
ചി റി	지방세	-	-	-	-	-	-
세입	소계(b)	-	-	-	-	-	-

3. 관련 의견

○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직군인의 유족의 예우를 위한 최소 경비 지원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직군인의 유족의 명예수당: 360백만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9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할 경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시 미취사 객실 허용기준에 대한 조례위임사항 신설함(안 제11조)
 - 휴양 콘도미니엄업은「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2)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사항: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10. 24. ~ 11.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 개정 현황

개정(3)	입법예고 등(9)	미개정(5)
김해시, 사천시, 고성군	창원시, 통영시, 양산시, 거제시, 산청군, 함양군, 함안군, 남해군, 하동군,	밀양시, 진주시, 합천군, 창녕군, 의령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을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도시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탁 대상업무) ① (생 략)	제10조(위탁 대상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	2
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u>「거창군</u>	<u>「거창군</u>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u>규정을</u> 준용한다.	
<u><신 설></u>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u>제12조</u> (시행규칙)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9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법령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요건이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되는 등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 없이 조례로 규정하여 불이익이나 부담을 주는 조항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재래시장(등록시장, 인정시장) ⇒ 전통시장
 - 시장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 다. 법령 개정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요건 완화함(안 제16조, 제17조)
 - 임시시장의 등록 ⇒ 신고
- 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 없이 조례로 규정하여 부담이나 의무부담을 주는 조항 삭제함(안 제8조 ~ 제10조, 제26조, 제30조, 제33조)
 -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상인회의 등록취소, 상인회의 보고 및 자료제출의무,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 마. 법령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여 발생하는 법령 불부합, 법령 제·개정 미반영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해당 조항 삭제 및 정비(안 제2조, 제3장, 제9장)
 - 법에서 정의한 용어 삭제: 재래시장, 임시시장, 상점가, 상인회, 시장관리자
 - 시장활성화구역 요건 조항 삭제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절차 ⇒ 지정 및 변경 절차
 - 과태료 부과·징수
- 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화 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조례 제2303호 부칙 제2조)
 - ○삭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사.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 제14조·

제19조의2·제65조·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9. 30 ~ 10.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를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6호를 제3호로 제7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 제2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 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 제6호) 중 "시장 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곳으로서 등록시장은"을 "곳으로서"로 "인정시장은 규칙"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 활성화사업"을 "상권활성화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4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장 제목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정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항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

제3장 장 제목 및 제14조 중"시장 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제목 및 본문 중 "시장 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등록 또는 인정"을 "인정"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14조 제목 및 본문 중 "시장 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4장 제목 중 "등록"을 "신고"로 한다.

제15조 중 "신청"을 "신고"로 한다.

제16조 제목 및 본문 중 "등록"을 "신고"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1조 중 "우리 군"을 "군"으로 "자에 한한다."를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법 제65조제7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후"를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를 "시장관리자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9장(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하고, 제4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조례 제1854호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제정 2007.11.07.)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혀 행 개 정 아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래시장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개설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 및 관리에 관리, 인정시장, 시장 활성화구역, 임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 농어민직영매장, 상인회, 시장관리자,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과태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뜻은----1. "재래시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삭 제>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하"등록시장"이라 한다)과 이와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어 군수가 시장 으로 인정하는 곳(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재래시장**(이하 "시장" 1.-----전통시장----이라 한다). 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 ----상권활성화구역---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 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사람을----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 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사람을-----3."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 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현 행	개 정 안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 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임시시장"이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삭 제>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 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삭 제>
6. "시설물"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u>시장</u> 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3 <u>상권</u> <u>상권</u> 활성화구역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 ·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u>4.</u>
8."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시장 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삭 제>

혅 했 개 정 아 9."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삭 제>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 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 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상권활성화사업--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 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 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 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 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 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

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혅 개 아 했 젔 ------따른다.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및 관리 제2장 시장의 인정 및 관리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법 시행령 |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 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따른-----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 하여야 하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 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시장-포함할 수 있다. <u><삭</u> 제>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u>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u>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혅 했 개 정 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 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삭 제〉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군수는 <삭 제>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 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 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 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장 상궈활성화구역 지정 <삭 제>

혂 행

제12조(시장 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 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장 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시장 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하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u>등록</u>)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 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 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الح	对	아
개	정	11

제12조(<u>상권활성화구역</u> 의	범위)	<u>상권활</u>
성화구역		
<u>인정</u>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 에 따른다.

제14조(<u>상권활성화구역</u>의 관리) ---<u>상권활성화구역</u>-----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

---<u>신고</u>-----

제16조(임시시장의 <u>신고</u>) -----

신고-----

<u><삭 제></u>

연 행	개 성 안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u>자</u> 의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 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설치 신청을 할 수 있는 농어민은 <u>우리 군</u> 에서 5년 이상 계 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u>자에 한한다.</u>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 <u>시장</u> 활성화구역,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 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특성에 따라 상인회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는 1점포당 1인 이상과 점포 없이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u>자를</u>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 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 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u><</u>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생 략) ② 군수는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65조제7항,「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따라 신청, 정산하고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대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삭 제>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u>시장관리자를 직접</u> <u>지정하거나,</u>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혂 행

개 정 안

<삭 제>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 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② ~ ④ (생 략

제35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 <u>시장</u>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거창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거창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거창군공중화장실 관리조례」,「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u>상권활성화구역</u>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위탁관리) ① <u>상권</u> <u>활성화구역</u>
<u>「거창군 사무의</u>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에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u>상권활성화구역</u>

현 행	개 정 안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u><삭 제></u>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삭 제>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u><삭 제></u>
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만약,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삭 제>
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대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과대료 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u>규칙</u> 으로 정한다.	제46조(시행규칙) <u>시행에</u> <u>시행규칙</u>
부칙(조례 제1854호 제정 '07.11.07.)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1854호 제정 '07.11.07.) <삭 제>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9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계약방법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경남i 다누리카드 소지자의 자동차 주차요금의 2분의 1 감경 규정 신설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신설함(안 제2조의2)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주차수요조사, 주차 시설조사 방법 명시
- 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신설함(안 제2조의3)
 -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성별영향분석 결과 반영함
- 다. 법령 위임없이 신설된 의무규정인 가산금 부과대상 정비(안 제3조제3항)
 - ○「주차장법」제9조제3항: 가산금액 조례로 위임(주차요금의 4배 이내)
 -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가산금 <u>부과대상 직접 규정, 조례위임 없음</u>
- 라. 수탁자의 자격을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2호)
- 마. 수탁자의 선정방법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 삭제(안 제6조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위탁방법은 일반입 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 할 수 있으므로, 법령 위 반사항으로 삭제함
- 바. 주차요금 50퍼센트 감경대상 추가함(안 제9조제2항제4호·제5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충전 시 면제), 경남!다누리카드 소지자 - 근거: 「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 사.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함(안 제12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은 "3퍼센트"로 하다.
- 아. 인용 법령 및 조문 변경함(안 제15조,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제4조, 제9조제1항 및 4조제2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조의4, 제4조,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2조

「경상남도 저출산 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 자연환경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10. 28. ~ 11.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안 제2조의3(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신설)
- (6) 전국 조례 개정 현황
 - 개정완료: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산광역시 외 31건
 - 경남개정완료: 김해시, 고성군, 하동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 2.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 3.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항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3(임산부 전용주차구역)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거창군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 ③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이용을 위한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역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공영주차장의 수탁자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 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

제9조제2항에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 면제) 5. 경남i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제11조제2항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 제8호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은 "3퍼센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영 제10조제1항"을 "영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신 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2.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 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 주차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3.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u>〈신 설〉</u>	제2조의3(임산부 전용주차구역)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거창군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③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따른 사람으로서,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을위한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역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임을 알수 있도록 표시하여야한다.

현 행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군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 할 경우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에 1시 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 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 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5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 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 으로 하는 법인
- 2. 공공 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과 비영리공익법인

	.,,		_		
제3조(주차요	요금 및	가산	금) ①)	
		_			
<u><삭 제></u>					

정

아

개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6조(<u>공영주차장의 수탁자 자격</u>) ①
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과 비영리
법인
3
∠21 _1\s

현	행		개 정 안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u>할 금액</u>	납부방법	
<u>제1항제1호의</u> 수의계약 경우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u>제1항제2호의</u> <u>경우</u>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그밖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가격	<u>3개월</u> 단위로 선납	
제9조(요금의 감면) (② 노상 및 직영노의 동차 중 다음 각 호하는 경우에는 별표 2분의 1을 감경한다 1. ~ 3. (생 략)	기주차장에 주 호의 어느 하 1에서 정한	나에 해당	제9조(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주차구획선 ② 주차구획선 1대 「 <u>주차장법 시행규칙</u> ③ (생 략)	당 표준규격이] 관하여는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규칙</u> ③ (현행과 같음)
		<u>신 살</u>	제1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 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비율"은 "3퍼센트"로 한다.

혀 했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1. ~ 2. (생략)
-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토지가 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4. (생 략)
-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 2. (생 략)
-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생 략)

② <u>영 제10조제1항</u>에 따른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 비용을 공영주차장 요금 별표 1에 따라 주차요 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주차요금 징수기준은 월 정기 주차권 요금(주. 야간)으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4. (현행과 같음) ②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3
3
3

개

젔

아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94

제 출 자

거창군수

1. 폐지이유

농어촌주택사업 및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융자금 상환이 만료(2011년 말)되고, 농어촌주택사업도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으로 특별회계가아닌 일반회계로 추진되고 있어 특별회계의 운용목적을 달성하여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주택법」제8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1. 03. ~ 11.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도내 조례 폐지현황: 10곳

○ 창원, 진주, 사천, 양산, 고성, 남해, 산청, 의령, 하동, 함양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9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주택법」에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공동주택관리법」이 분법·제정('16.8.12.) 됨에 따라 그 입법취지에 맞게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명 및 목적을 변경함(안 제명, 제1조)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목적으로 함
- ⇒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함
- 위임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제3항
 - ③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위원회의 회의·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나. 상위법령과 불일치조항 정비(안 제2조, 제8조제1항)

- 적용범위: 법 제정 전 위임법인 「주택법 시행령」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에서는 제한범위가 있었으나 제정법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
- 분쟁조정 신청 시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 신청요건 삭제
 - 불합리한 규제개선

다. 상위법령 재기재·확인에 불과한 조항 삭제(안 제3조·제4조)

-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기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구성)

라. 대표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10조의2)

○ 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8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11. 03. ~ 11. 2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조례 개정현황
 - 입법예고 중(5곳):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 산청군, 의령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공동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를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로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조"를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으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입주자(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때"를 "경우"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 규정"을 "제2항단서"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대표자의 선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단체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 대표자"라 한다)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u>운영조례</u>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u>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공동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삭 제>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거창군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삭 제>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회의가 추천하는 자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추천하는 자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의 위 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 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42조 〈삭 제〉 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 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당사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입주자(세 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거창군 공동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총괄---② (현행과 같음)

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쟁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 전까지기간연장의 이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u>제1항</u>
(신 설)	제10조의2(대표자의 선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단체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 대표자"라 한다)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선정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행위를 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

현 행	개 정 안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2. ~ 6. (생 략) ②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제14조(수당 등)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u>범위</u>

[별지 제1호서식]

	공	동주	택관리	분쟁	조정 신	·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신청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대 리 인	주	소				(전화)	
리시制이	성	명			생년월일		(남,여)
피신청인	주	소				(전화)	
분쟁대상	단 >	지 명			세대수		
공동주택	위	최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발생사유							
및							
교섭경과							

「<u>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u>」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동	동주택관리] 분	쟁조정	안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1 0 L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네 니 긴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최신경원 	주	소				(전화)	
신청내용							
분 쟁 조 정 안							

「<u>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u>」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동	· 주택관리	분	쟁조정	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u> </u>	주	소				(전화)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시신 경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분 쟁 조정내용							

「<u>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u>」제9조제3항에 따라이 사건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공동	주탄	l관i	믜 ;	분장	조	정우	원회	출	석소	3.を	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건 () 건	주	소							(전화	<u>·)</u>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네 너 근	주	소							(전화	.)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円건경한	주	소							(전화	.)	
출 석	성	명					자 격				
대상자	주	소									
출 석 요	청 일	길 자	년	월	일(:) *분쟁 <i>조</i>	스정위	원회	개최	일자임
출 석	장	소									

「<u>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u>」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거창군 <u>공동주택관리</u>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

※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청서, 신분증, 도장 및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공동	주탄	관리] 분쟁	조정()	거부・중	·지) 통	보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신청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대리인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최신경원 	주	소			·	(전화)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이유							

「<u>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u>」제11조에 따라 위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공	동주	- 택	관리	분장	조진	성 종	결	통보	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	일		(남,여)
'긴 'ö' 닌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	일		(남,여)
네 너 난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	일		(남,여)
시신경인 	주	소					·	(전화)	
신청내용									
분쟁조정 종결이유									

「<u>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u>」제12조에 따라 위 사건의 분쟁조정을 종결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①

[별지 제7호서식]

공동	구택관	리 분쟁	조정	위원	원회	의	결서
일 시			장	소			
참석위원				ı			
	단 지 명						
그 기 네 샤	위 치						
조정대상	신 청 인						
	피신청인						
신청내용							
조정결과							
0 _ ,							
Г	거창군 <u>공동</u> ~	주택관리 분쟁	위원회	운영	조례	제73	돈에
	내와 같이 조 ⁷					,	,
		년 월	1	일			
	거창군	· 공동주택관	리 분정	생조정·	위원회		
직 위	성 명	서명또는날인	직	위	 성	 명	서명또는날인
위 원 장	0 0	10-12	위	- '' 원	0	0	10-12-2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